

2018. 5.8.(화) ~  
5.10.(목) / 3일간

#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## 목 차

1.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4
2. 장성 군관리계획(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..... 5
3.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5
4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..... 6
5. 2018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..... 9
6.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..... 9
7. 2018년도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 
운용계획 변경안 ..... 10

## 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 군관리계획(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	원안가결
○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	수정가결
○ 2018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○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○ 2018년도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
## 주요내용

### 1. 장성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8. 5. 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(납세자 권리보호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(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·자격 등)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,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#### ▪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 - (현행) 장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
  - (개정) 장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납세자보호관의 설치, 선발기준,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~ 제7조)
-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(안 제8조 ~ 제9조)
- 고충민원의 준칙, 대상, 신청, 처리기간 및 불복 제외대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 ~ 제19조)
- 세무조사 기간 연장, 연기신청 및 결정(안 제20조 ~ 제23조)
-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 기본원칙 등(안 제24조 ~ 제28조)
- 납세자권리헌장, 제도개선 과제관리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(안 제29조 ~ 제39조)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

## 2. 장성 군관리계획(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- 제출일자 : 2018. 4. 5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 - 장성군 삼서면 두월지구내 기초성되어 있는 공장부지로 공장증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(구역)변경 관련 주민제안 사항에 대하여
 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 - 제안자 : ㈜하랑유리 대표 이재원
  - 제안명 : 장성 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안 주민제안
  - 위치 :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산 66-3일원
  - 사업비 : 82억원(부지조성비 7억원, 건축비 75억원/민간 100%)
  - 기간 : 2018년 ~ 2019년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

## 3.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8. 5. 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제2항 및 제5항(점용료 등의 징수) 개정 사항을
  - 「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」에 반영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 사용된 조문과 용어를  
올바로 개정하고자 함

- **주요내용**

- 목적조항에서 사용된 약칭 삭제(안 제1조)
  - (현행) 소하천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
  - (개정) 소하천정비법
- 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조항에서 약칭 사용(안 제2조)
  - (현행) 법 제14조
  - (개정) 소하천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
- 용어 변경(안 제1조, 제2조제2항, 제3조제5항)
  - (현행) 부당이득금
  - (개정) 변상금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

#### 4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- **제출일자** : 2018. 3. 14.
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

- **제안이유**

- 2018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
- 예산성립전 사용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출 조정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- **주요내용**

- 예산규모 : 31,280백만원

· 일반회계 세입 29,478백만원

지 방 세	:	-백만원
세 외 수 입	:	49백만원
지방교부세	:	15,922백만원
조정교부금	:	-백만원
보 조 금	:	105백만원
보전수입등	:	13,402백만원

· 특별회계 세입 1,802백만원

세 외 수 입	:	20백만원
보 조 금	:	-백만원
보전수입등	:	1,782백만원

· 일반회계 세출 29,478백만원

정 책 사 업 비	:	24,616백만원
(예 비 비)	:	(△7,895만원)
재 무 활 동	:	2,515백만원
행정운영경비	:	2,347백만원
(기 본 경 비)	:	9백만원
(인력운영비)	:	2,338백만원

· 특별회계 세출 1,802백만원

정 책 사 업 비	:	1,802백만원
(예 비 비)	:	(△196백만원)
재 무 활 동	:	-백만원
행정운영경비	:	-백만원
(기 본 경 비)	:	-백만원
(인력운영비)	:	-백만원

■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 별첨

##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결과

1. 세 입 : 423,555,449천원

가. 삭감(일반+특별) : 해당없음

나. 증액(일반+특별)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 요구액 (제출 예산액)	심 사 결 과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423,555,449	-			423,555,449
일반회계	404,252,733	-			404,252,733
특별회계	19,302,716	-			19,302,716

2. 세 출 : 423,555,449천원

가. 삭 감

1) 일반회계 : 4,690,000천원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나. 증 액

1) 일반회계 : 해당없음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 요구액 (제출 예산액)	심 사 결 과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423,555,449	4,690,000	4,690,000	0	418,865,449
일반회계	404,252,733	4,690,000	4,690,000 (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)	0	399,562,733
특별회계	19,302,716	0	0	0	19,302,716



## 5. 2018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- 제출일자 : 2018. 3. 14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사전에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- 주요내용
  - 변경기금 : 사회복지기금
  - 변경사유 :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등
  -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수 입				지 출			
항목	경정	기정	증감	항목	경정	기정	증감
전입금	80,000	0	80,000	예치금	3,375,929	3,295,929	80,000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

## 6.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- 제출일자 : 2018. 3. 14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사전에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변경기금 : 체육진흥기금
- 변경사유 : 2018년도 조성계획 변경
-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2017년도말 조성액(A)	2018년 조성계획						비고
	수 입(B)		지 출(C)		증 감(D=B-C)		
	경정	기정	경정	기정	경정	기정	
998,288	328,522	310,346	28,522	10,346	300,000	300,000	
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

**7. 2018년도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

- **제출일자** : 2018. 5. 1.

- **제 출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제안이유**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사전에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- 변경기금 :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
- 변경사유 : 2018년도 운용계획 변경(소득증대사업비 집행)
-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	경 정		기 정	
예산과목 (지출)		기금예치금 (602-01)	기타보상금 (301-11)	기금예치금 (602-01)	기타보상금 (301-11)
예산액	1,285,230	110,230	1,175,000	1,105,230	180,000
증감	-	△995,000	995,000		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8. 5. 10.)